

<붙임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추천(신청) 안내

1. 모집분야 및 인원 : 3개 분야, 총 5명

계	토목	건축	설비
5	2	2	1

2. 모집기간 : 2023. 7. 19.(수)~ 2023. 7. 25.(화)

3. 자격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6항)

- ①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 ②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향이 있는 사람
- ③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6.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시 붙임3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전문분야 (토목·건축·설비)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된 인원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 최종 선정된 전문가는 3년동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도급계약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심의안전 발생시에 개최됩니다.

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심의안전 발생시 개최됩니다.

마. 제출하신 서류(신청서 등)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과 담당자 (☎ 02-6438-2063)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